統一情勢分析: 2000-02

미 국무부의 「2000년 북한인권보고서」와 통일연구원 「2000년 북한인권백서」 비교분석

2000. 4

통 일 연 구 원

- 목 차 -

Ⅰ. 문제제기 ····· 1

Ⅱ. 미 국무부의 「각국 인권실태 보고서」의 발간 배경 ····· 2

Ⅲ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의 주요 특성 ····· 4

1. 시민적·정치적 권리 강조 ····· 4

2. 북한인권 상황 개요 ····· 4

Ⅳ. 북한인권실태 비교 분석 ····· 6

1. 시민적·정치적 권리 ····· 6

2.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 ····· 33

Ⅴ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에 대한 평가 및 우리의 고려사항 ····· 40

1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 평가 ····· 40

2. 우리의 고려사항 ····· 43

<부록>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와 「북한인권백서」의 항목별 내용 비교표 ···· 45

Ⅰ. 문제제기

○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「각국 인권실태 보고서」를 발표하고 있고, 이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실태를 세계에 소개하고 있음. 이것을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라 지칭함.
- 금년에는 2000년 2월 25일에 발표

○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에 대한 남북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.
- 남한 언론들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한 것이라 비판
- 북한은 외무성 발표를 통하여 '미 인권보고서'가 북한을 독재국가로 지칭한 것은 미국의 반북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

○냉전종식후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와 기타 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실태 보고는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화하는데 기여할 것임.

○본 보고서는 미 북한인권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,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「북한인권백서」와 그 내용을 비교하여 북한인권실태를 평가함.

Ⅱ. 미 국무부의 『각국 인권실태 보고서』의 발간 배경

○미국은 카터행정부때부터 인권을 대외정책의 주요의제로 설정하고, 그 일환으로 미 국무부의 「인권 및 인도국」이 1977년부터 각국의 인권실태를 보고해 왔음.

- 현재는 미 국무부의 「민주주의, 인권 및 노동국」이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간함.

○카터 행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한 이유는 미국이 도덕적인 우월성을 기반으로 소련과 동구권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기인함.

- 1975년 헬싱키협정으로 동서간에 인권의 중요성을 합의한 바 있어 미국의 인권외교 강화는 국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임.
- 특히 미국은 인권정책을 통해서 동구권을 소련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었음.
- 또한 인권정책으로 월남전후 퇴색한 미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음.

○카터 행정부는 인권과 안보를 연계하여 대외지원법(1961) Section 502B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음.

- 대외지원법 Section 520B는 “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심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안보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러나 대통령이 특별한 상황으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안보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회에 서한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.”라고 규정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음.

○카터 행정부이후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,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「각국 인권실태 보고서」는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자료가 되고 있음.

Ⅲ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의 주요 특성

1. 시민적·정치적 권리 강조

○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보고서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내용중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, 총 6절중 1~5절까지 시민적·정치적 권리를 다루고 있음.

- 1절: 개인의 존엄성(생명권)
- 2절: 시민적 자유
- 3절: 정치적 권리 : 정권교체 권리
- 4절: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침해 사례 조사에 대한 북한의 태도
- 5절: 인종, 성별, 종교 등 사회계층에 대한 차별

○국제인권규약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는 6절의 노동자 권리에 제한하고 있음.

- 미국은 국제인권규약중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는 시민적·정치적 권리와는 달리 보편적인 인권개념이 아니고 특정 계층을 위한 권리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.

2. 북한인권 상황 개요

○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 거부해 왔음.

- 행방불명과 재판을 거치지 않는 처형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음.
- 불법구금이 집행되고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함.
- 독립적인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음.
-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누릴 권리가 없음.

○ 대부분의 국제인권규범, 특히 개인의 권리를 국가와 당의 목표를 파괴하는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개념으로 간주함.

○ 형법은 매우 다양한 '반혁명 범죄'를 사형과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탈북 및 탈북시도, 국가정책에 대한 비방 및 외국방송 청취, '반동적' 편지 작성 및 인쇄물 소지 등

○ 정부는 표현, 언론, 집회,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키고 모든 문화, 미디어 활동은 당이 통제함.
- 라디오, TV 등은 오직 북한 방송만 듣게 고정
- 따라서 외부정보는 정부가 허용한 것만 유입 가능

○ 정부는 종교, 이주,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음

○ 유부녀와 처녀들의 인신매매 보고가 있음.

○ 금년 보고서에서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.
- 북한의 경제침체가 일단 중지
- 유부녀와 처녀들의 인신매매 사실보고
- 종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지속

Ⅳ. 북한인권실태 비교 분석

1. 시민적·정치적 권리

가. 개인의 존엄성과 다음 사안으로부터의 자유

(1) 정치적 및 재판을 거치지 않는 처형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정치범, 반정부인사, 송환된 탈북자 및 김정일 반대음모자들을 처형함.
- 로이터통신의 미확인보도에 따르면, 1998년 3월 반김정일 쿠테타 혐의로 수천명의 군인이 체포되었고 많은 군인이 처형됨.

○“이데올로기적 일탈”, “반혁명 범죄”, “반사회주의” 등 개념이 모호한 “범죄”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됨.

○사형은 노동자, 학생,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집행되거나 동료죄수 앞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음.
- 서관희(당 농업담당비서), 최현덕(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) 등 당·정·군의 고위간부들이 공개 처형됨(1997).

○국제사면위원회(Amnesty International: AI)는 1972~1992년까지 적어도 23명이 공개처형 되었다고 보고함.
- 죄명은 ‘절도’와 ‘기차에서 쌀 절도’ 등이 포함됨.
- 북한관리는 1985년이래 단지 1~2차례의 공개처형을 실시했다고 AI에 말함.

<북한인권백서>

○통일연구원의 「북한인권백서 2000」은 생명권과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분야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.

○북한에는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 '국가전복음모죄', '반동선동선전죄' 및 '조국반역죄' 등이 있고, 범죄자들은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짐.
- 위와 같은 죄목은 개념규정이 모호하나 반당, 반김정일분자, 해외정보습득자, 간첩행위 및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적용됨.

○정치범수용소를 북한주민들은 "특별독재대상구역", "정치범 집단수용소", "종파굴" 등으로 부르고, 북한당국은 "00호 관리소"라고 부름.

○공개처형은 1995년 하반기 김정일의 '친필방침'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음.
-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대도시의 구 또는 시, 군 단위로 숫자를 할당하여 실시하며 공개처형 숫자는 AI보고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됨.
- 경제난,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로 공개처형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식량절도범들도 이에 해당되고 있음.
- 정치사상범은 국가안전보위부의 단독책임하에 비공개,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함.
- 「북한인권백서 1999」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위원 이봉원대장, 북한노동당 농업담당비서 서관희, 「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」 비서 최현덕 등 다수 간부가 1997년 간첩, 부패혐의 등으로 공개 또는 비밀처형 되었다는 일본 「교토 통신」 보도를 인용함.

ㅇ최근 공개처형이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반대세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처형을 감소하는 대신 비밀처형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음.

(2) 행방불명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ㅇ행방불명은 대부분 정부의 책임으로 추정됨.
- 정치범은 재판없이 비밀리에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, 가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.
- AI 보고서는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행방불명이 됨.

ㅇ북한은 외국인 납치에도 개입하였음.
- 일본언론들은 지난 30여년간 20여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함.
- 1978년 실종된 남한의 고등학생 3명은 북한에 납치되어 간첩교육에 투입되고 있음.

<북한인권백서>

ㅇ정치사상범들의 처벌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함.
- 남편쪽이 정치범으로 처벌되면 부인은 자동으로 이혼하나, 부인쪽 집안이 정치범으로 걸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음.

ㅇ휴전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남한사람은 총 3,756명이고, 현재까지 억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454명임.

- 남한의 고교생 납치는 5명으로 김영남, 홍건표, 이명우, 이민교, 최승민 등이고, 납북자들은 북한에서 간첩교육에 투입됨.
- 또한 이용가치가 없는 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됨.
- 1994년 AI는 49명의 정치범 명단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.

ㅇ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·월북자 2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힘.

(3) 고문과 기타 잔악한 행위,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ㅇ죄수들은 학대받고 있으며, 질병, 굶주림, 유기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.

- 죄수들은 중노동, 일상적인 구타 및 고문에 시달리고 있고, 군에 의한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함.
- 죄수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거나,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'독감방'에 수주간 가두는 경우도 있음.
-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자는 다른 죄수들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음.
- 또한, 북한당국은 "모든 종교는 아편중독"이라고 가르침.

<북한인권백서>

ㅇ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은 '교화소'에 수용되고 사회안전성이 관할함.
-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「노동단련대」에 보내 1~6개월 정도의 강제노동을 시킴.
- 교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고, 심한 경우에 처형됨.
- 또한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'독감방'에 수감되며, '미달밥' (1일 90g)이 배급됨.

ㅇ교화소내에서는 17시간의 노동의 강요되고 있음.

ㅇ정치범수용소의 경우,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이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의 금지, 친지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됨.

ㅇ북한당국은 탈북자가 송환될 경우, 한국의 기독교신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음.

(4) 불법적 체포, 구금 및 추방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ㅇ북한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구금, 투옥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.

-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, 가족이 구금자의 혐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함.

○12개의 정치범수용소에 15만~20만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부인하고 있으나, “실수로 죄를 범한 자”는 “교화소”로 보낸다고 인정함.

○1998년과 1999년에 한국계 외국인이 명기하지 않는 “불법 행위”를 이유로 각각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 있다가 풀려났음.

○1999년 3월 방콕 주재 북한외교관 홍순경과 그의 가족이 북한 관리들의 유괴시도에서 탈출하여 정치적 망명을 요청함.
- 북한정부는 홍순경의 공금횡령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요구하였음.
- 1999년 10월 현재까지 홍순경의 망명요청 및 북한의 인도 요구건은 계류중임.

○북한이 강제추방을 행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.
- 그러나 북한정부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강제이주 시키고 수만명을 평양에서 지방으로 강제이주시킴.
- 신체장애자,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을 국내로 추방하고 있음.
- 1997년 9월에 약 500명의 고위간부들이 국내 추방에 처해짐.

<북한인권백서>

○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수색·압수 및 구속처분등이 가능함.

○남한의 국가정보원은 10개의 정치범수용소에 20만 7천명이 정치사상범으로 재판절차 없이 집단수용되고 있다고 밝힘.
-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며, 그 범위는 직계에 해당됨.

○북한은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고 있음.
- 출신성분이 나쁜사람들은 평양시, 남포시, 해변가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음.

○장애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집단관리하고 있음.
-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평양이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.
-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지방으로 이주시킴.

○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“난쟁이들이 종자를 퍼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두라”고 지시함에 따라 함경남도 정평군에 난쟁이 집단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함.
- 영구피임조치를 취했을 경우 당의 승인하에 외국인이 방문하지 않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알려짐.
- 1978년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하여 불명의 사회안전원이 16세 가량의 반신불수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귀순자가 증언함.

○범죄자, 탈북자, 성분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로 강제 이주시킴.
-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 또는 친인척의 과오로 산간오지로 강제 이주되는 경우도 있음.
- 함경남도 덕성군의 경우 과거 평양시 출신 주민이 50%에 달함.

(5)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거부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헌법은 재판소의 독립과 법에 따른 재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실행하지 않음.
- 사회안전성은 정치적 사건을 재판 없이 처리하며, 국가안전보위부에 형벌을 위임함.

○정치범 재판에는 변호사가 제공되지 않으며, 형사범 재판에 정부가 변호사를 제공하지만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옹호보다는 죄의 자백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.

○신문에 실린 김일성, 김정일 사진을 훼손한 자도 정치범으로 처벌하며, 북한정권의 해외방송 요원으로 고용된 외국인이 북한정권의 해외홍보 수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없이 1년동안 투옥되었으며 석방후 이에 대한 불평을 이유로 추가로 6년동안 투옥되었음.

○경제난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늘어남에 따라 정치범의 수도 증가함.

<북한인권백서>

○북한의 형법은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미흡함.
-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무시, 형벌 불소급원칙 부인, 방조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, 김일성 부자에 대한 비방 또는 저항은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여 사형 또는 전재산몰수형 처벌 등
-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, 사회안정성은 기타의 범죄를 취급하고 있음.
-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부위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권유린사례가 빈번함.

○북한의 변호사는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으로 볼수 있으며, 개인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함.

○황장엽은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설치한 「법무생활지도위원회」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증언함.
- 이 기구는 범죄예방보다는 주민의 통제와 단·정 간부들의 부정·부패를 감독

(6) 사생활, 가정, 통신에 대한 불법적 간섭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헌법에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나, 정부는 이를 무시함.

- 북한당국은 국제적 인권규범, 특히 개인의 권리를 국가나 당의 목표를 저해하는 외국의 사회개념이라고 인식

○ 김정일은 외국에서 수입한 인권에 관한 “낡은 잣대”로 “새로운 사고”를 대표하는 북한사회를 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함.
- ‘반동 선전문’이나 허가 없이 외국방송 듣는 것에 심한 형벌을 가함.

○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으나, 익명의 청원이나 국가행정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, 사회안전성이나 국가안전보위부는 필적감정으로 청원자를 색출하여 처벌함.

○ 정부는 집단주의, 민족주의, “주체사상”이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독재를 정당화함.
- 주체사상은 “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”이라고 강조하지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재해석할 수 있음.
- 지도자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, 모든 반대세력을 고립시키는 것이 사회이익이라고 주장

○ 1950년대 후반이후 북한정권은 사회를 “핵심”, “동요”, “적대”의 세 계층으로 분류함.
- 당성,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세 계층을 더욱 세분화함.
- 계급성분에 따라 직장, 고등교육, 주택, 병원이용과 상점이용에 차별이 가해짐.
-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동요 또는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며, 잠재적 적대계층이 인구의 25~30% 또는 20%정도로 평가됨.
- 한국전쟁시 남한으로 이주한 친척이 있는 주민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됨.

<북한인권백서>

○사생활에 대한 대표적인 침해는 도청임.
- 일반주민 뿐만 아니다 심지어 당·정·군의 고위간부들도 도청 당하고 있음.
- 황장엽은 고위간부들에 대해서 엄격히 도청한다고 증언
- 해외친척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 및 이색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도청이 강화됨.
- 대학생과 인테리계층,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등은 "머리에 든 것이 많을수록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" 고 판단하여 감시를 강화

○"생활총화제도"는 상위조직으로부터 하위 인민반에 이르기까지 실시하여 전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.
- 가정생활, 부부관계까지도 보고할 의무를 지며,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검열함.

○북한당국은 1958년 8월 사회주의 제도 개혁을 완비하고 동년 12월까지 전체주민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함.
- 이후 1983년까지 8번의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시행하였음.
- 전체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함.

○이중 복잡군중(적대계층)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음.
-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,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의 대상, 감시당하는 고립대상, 집중적인 교양학습이 필요한 교양대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.

나. 시민의 자유

(1) 표현과 언론의 자유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헌법에 “사회주의적 생활규범”을 지키며 “집단정신”에 복종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와 시민의 자유보다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○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통제되고, 정부비판이나 정책비판은 감옥 또는 “노동교화소”로 보내짐.

○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음.
- 외국기자, 방문자들의 활동감시
- 국내미디어의 엄격한 통제
- 외국방송은 정부고위관리들에만 허용되고 일반주민들이 청취하는 경우 엄격히 차별

<북한인권백서>

○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엄격히 제한되며 김일성·김정일의 교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음.

○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로서만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됨.

○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유언비어로서, 즉 ‘비통’(비밀통신)을 통해서 국내사정 및 외부소식을 접하고 있음.

○1987년 북한형법에서 “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”고 규정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음.

(2) 집회와 결사의 자유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헌법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정부는 실행하지 않고 있음.
- 정부는 허가 없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음.
- 정부가 창설한 조직 이외의 조직은 없으며, 직능조직들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함.

<북한인권백서>

○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각종 조직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, 이 조직들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‘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대’로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함.

○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·결사는 집단적 소요로 간주되고, “소요를 일으킨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처한다”라고 규정되어 있음.

○불만주민들의 음성적 집회·결사는 체포되면 중형을 받음.

(3) 신앙의 자유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헌법은 '종교건물을 지을 권리'를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으나, 같은 규정에는 종교를 '외세를 끌어들이거나'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.
- 국가이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 이외의 모든 조직적 종교활동 금지
- 최근 북한정권은 몇개의 정부후원 종교단체 형성을 허용하였는바, 이들은 외국 및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 역할을 수행함.
- 소수의 불교사찰이 있으며, 2개 개신교회, 1개의 가톨릭 교회가 1988년 평양에 개설되었음.
- 북한은 500개의 가정교회에 10,000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주장함.

○종교적 이유로 투옥된 자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다른 죄수들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음.

<북한인권백서>

○북한당국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'종교는 인민의 아편'이며 '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'라는 이념적인 편견이 지속되고 있음.
-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음.

○북한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하였고, 1989년 1월에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불교의 성도절 기념법회를 가짐.
- 북한당국은 1만 2천명의 기독교 신자와 500여개의 가정교회가

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종교인은 전무한 것으로 보임.
- 북한당국은 과거에 종교인 탄압이 있었음을 시인

○최근 북한은 기독교가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기독교 포교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주민들에게 기독교 전파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음.
- 이와 관련, 송환된 탈북자들이 한국의 기독교 신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면 가혹한 형벌을 가함.

○현실적으로 북한당국이 선전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외의 종교인은 존재할 수 없음.

(4) 국내이동, 해외여행, 이민 및 송환의 자유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국내여행은 공무 여행, 친척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여행증을 발급 받아 갈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.
-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여행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고, 식량을 구하려는 인구이동이 있다는 보도가 있음.

○AI는 러시아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상을 보고한 바 있음.
- 이들은 식량 부족과 엄격한 규율로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음.
- 러시아내 난민은 귀국을 거부하는 북한노동자 집단과 북한에서

러시아로 탈출한 두 집단이 있음.

- 러시아내 북한난민들은 신분증이 없어 고난에 처해 있는바,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노동자들의 여권 및 기타 신분증을 북한의 국경수비대가 압수함.

○최근 탈북자들의 증가로 인해, 북한정권은 탈북자의 친족들에게 가혹하게 보복하며 형법은 탈북 및 탈북시도를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.

- 국경수비대는 탈북자 사살 명령을 하달 받음.
- 황장엽 망명후 주민통제가 강화됨.

○1959~82년까지 자발적으로 송환된 재일교포는 9만 3천명(이중 일본인 처는 6,637명)임.

- 북한은 1997년까지 한사람의 일본인 처의 일본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음.
- 1997년 북·일 북경회담 합의에 따라 1997년 1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27명의 일본인 처가 일주일 동안 일본을 방문함.
- 1998년 6월 이후 일본인 처의 일본방문이 취소되었는 바, 북한언론은 “일본측의 인위적인 장애와 비인도적 행위” 때문이라고 주장함.

○북한은 유엔회원국이지만 국제난민 포럼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접촉이 없음.

- 또한, 북한의 망명정책도 알려지지 않음.

<북한인권백서>

○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'거주, 려행'의 자유를 가진다고 처음으로 명문화했으나 법규정과 현실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음.

- 귀순자들은 이 조항이 대외선전용이거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함.
-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 개인여행은 불가능하며 증명서류를 소지해도 여행지 범위는 크게 제한되어 있음.

○여행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교환을 제한함으로써 체제 부정적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음.

○식량난으로 여행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불법적인 여행이 크게 늘었다고 귀순자들은 증언하고 있음.

-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손쉽게 여행증을 구할 수 있다고 함.

○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가 다루고 있지 않는 중국내 탈북자 실태는 다음과 같음.

- 중국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동북3성(요녕, 길림, 흑룡강성)의 조선족 사회를 근거지로 은신하고 있음.
- 중국내 탈북자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 국무원산하 모 국책연구소가 탈북자의 분포가 높은 동북 3성지역을 심사하여 작성한 「북한의 탈북자 및 사회현상」 보고서에서 송환탈북자는 1996년 589명, 1997년 5,439명, 1998년에는 6,300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함.

- 따라서 잡히지 않고 중국내 체류하는 탈북자는 상당한 수에 달함.
- 중국으로 탈북한 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5.5%이고, 연변 지역외 동북 3성지역에는 90.9%에 이르고 있음.
-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바, 인신매매는 한화로 약 60~80만원에 거래되고 있음.

○중국은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탈북자들의 절도, 인신매매, 밀수 및 살인 등 범죄행위 증가로 인하여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송환하고 있음.
- 중국은 1982년 「난민협약」과 「난민의정서」에 가입하였지만 탈북자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.
- 1960년 중·북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「중국·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」 (일명 「밀입국자 송환협정」)과 1986년 체결된 「국경지역 업무협정」에 따라 중국내 북한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됨.
- 1994~95년동안 탈북자 140명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됨.

○러시아내 탈북자 실태는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와 유사함.
- 러시아내 탈북자수는 200~300명 정도로 이들중 상당수가 러시아내 벌목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탈출한 자들임.
- 러시아내 탈북자들은 제도적으로 난민지위 획득이 가능하나 러시아 지방정부는 탈북자들을 송환시키고, 송환되는 과정에서 반항하면 즉결 처형됨.

○러시아와 북한간의 새로운 임업협정(1995.2)에서 북한 안전원의 탈북자 추적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음.

다. 정치적 권리: 시민이 정권을 교체할수 있는 권리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리더쉽이나 정권을 교체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함.
- 정치제도는 김정일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조선노동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.
- 최고인민회의는 당 지도자가 제시한 결의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수행함.

○민주주의로 가장하기 위해서 “소수정당”을 만들었으나 조선노동당이 창설한 것임.

○자유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김정일은 자유선거와 정당간의 경쟁을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이라고 비난함.

○각종 선거는 비정규적으로 치루어지고 조선노동당이 승인한 후보자는 100%투표에 99% 이상이 당선됨.

○당·정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은 거의 없음.

<북한인권백서>

○북한헌법에 일반적, 평등적,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거는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음.

-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17세 이상

○북한의 선거는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,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후보를 추천함.
- 따라서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.

○여성의 최고인민회의 진출 비율은 20%로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.5% 에 불과함.
- 국정감독이나 비판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은 의문시 됨.

라.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국제 및 민간 인권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북한당국은 인권 상황을 모니터하거나 인권침해를 비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조직을 허용치 않고 있음.

○북한은 1992년 「조선인권연구협회」를 창설하였으나, 이 기구는 북한내의 인권침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, 북한정부의 선전기관에 불과함.

○1998년 4월 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실태를 비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, 인권의 이름아래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.

○1996년 AI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법률개혁 등을 논의한 바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국제인권단체의 북한 방문요구를 무시하고 있음.

○1997년 8월 유엔 소수민족 보호 및 차별금지 소위원회(유엔 인권 소위원회)는 북한인권실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함.
- 북한은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ICCPR)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

○1997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탈퇴시도를 비판하면서 국제규약으로부터의 탈퇴불가를 통보함.
- 1998년 8월에도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시 채택함.

<북한인권백서>

○「북한인권백서」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고 있음.
- 1995년 북한은 탈북자 처벌과 관련이 있는 형법이 개정되었다고 AI에 통보한 후에도 개정된 조항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.
- 1996년 AI는 탈북자 즉결처형 및 송환후 처형실태를 보고함.

○「조선인권연구협회」는 국제무대에서 인권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남한내 출소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국제화시키면서 북한의 인권을 희석시키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
마. 인종, 성별, 종교, 장애,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헌법은 모든 주민의 평등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정부당국은 대부분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고 있음.
- 사회적 기본지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.

(여성)

○헌법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여성노동력의 비율이 인구비례에 상응하지만 여성은 당·정 고위직에 거의 진출하지 못함.
- 중소기업소는 여성 노동력이 절대 다수이며, 노동연령 여성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함.
- 북한 여성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보고가 있음.

(어린이)

○사회적 규범은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가족위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.
- 15세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실시
- 그러나 부모의 죄에 대한 연좌제로 인해 교육기회나 다른 사회적 기회가 제한당할 수 있음.

○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강렬한 정치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음.

- 어린이들은 일주일중 몇시간 동안 군사훈련이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함.
- 특별임무를 완수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공장이나 농장에 파견되어 노력봉사를 하기도 함.

○ 실제로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.
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(UNCRC)는 북한이 제출한 1996년 2월 보고서에 대한 결론에서 “어린이를 위한 전략, 정책, 계획 등이 헌장에 새겨져 있는 권리에 기초를 두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”고 보고함.
-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장애어린이들이 건강, 교육 등의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거나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촉진하는 수단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함.

○ 세계식량계획(World Food Program)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7세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.

- 오지에서는 6세이상 어린이들이 장기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함.
- 1997년 8월 유엔아동기금(UNICEF)의 고위관리는 기아와 질병으로 8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, 80만 이상의 어린이가 정도가 덜하기는 하지만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함.

○1998년 가을 “국경없는 의사회”(DWB)는 북한당국이 보다 많은 병자와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철수함.

○“국경없는 의사회” 간부는 고아나 집없는 어린이들은 “9·27수용소”에 수용된다고 보고함.
- 1995년 9월 27일 국가를 ‘정상화’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설치되었는데, 수용소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은 수용소 내 실태는 비인간적인 상황이라고 밝힘.

○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어린이 학대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, 어린 소녀들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보고가 있음.

(장애인)

○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있음.
-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시내에서 장애인을 거의 볼 수 없는 이유는 장애인들을 일상적으로 지방으로 보내기 때문임.
- 평양에서 2~3년에 한번씩 장애인을 색출해서 지방의 특별구역에 격리시키고 있음.
-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나 정부의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없음.

○1999년 4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“사실상의 차별”을 비난함.

<북한인권백서>

(여성)

○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 구조로 인해 사회참여나 가정생활에서 북한여성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음.

○1970년대 이후 김일성·김정일의 유일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'사회정치적생명론'과 '사회주의 대가정' 개념이 도입되고 가부장적 국가관이 강조됨으로써 명목상의 여성해방과 실제적 삶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나타남.

○북한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.5%(1993)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함.
-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등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2%로 남성보다 높음.
- 정부기관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66.4%임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착취는 심각한 실정임.
- 또한 여성들은 직종간 불평등과 임금상의 차별을 당하고 있음.

○가정에서도 전근대적인 전통이 강조되고, 금혼의 범위, 부성추종의 원칙, 가족부양의 범위 등 가부장적 질서의 요소들이 1990년「가족법」에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음.

○가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성폭행임.
- 귀순자들은 당간부들이 입당 및 처우개선을 미끼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은밀히 이루어진다고 증언함.

- 직장내에서의 성희롱도 일상적인 현상으로 아무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,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○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.5% 정도임.
- 국정 감독이나 비판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은 진출비율 만큼 높지 않음.

(어린이)

○북한인권백서에서 어린이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생존권에서 다루고 있음.

○북한은 11년동안 무상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○현재 북한의 교육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경제난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- 교육내용은 정치이데올로기 주입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, 김일성·김정일에 대한 충성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됨.

○북한은 경제난으로 평양 등 일부 대도시를 재외한 모든 지방학교에서 교과서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6~7권을 교실에 비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함.
- 공책이 공급되지 않아 학생들이 필기를 못하고 있음.

○학생들은 농촌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총 두달반 동안 의무적으로 노력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.

○또한 경제난으로 학생이나 교원들의 출석·출근율이 낮음.
- 학생이나 교원들이 식량구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음

○식량난은 어린이들의 발육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음.
- 1998년 세계식량기구(WFP), 유엔아동기금(UNICEF), 선교연합(EU)은 공동으로 북한내 8개 지역에서 7세미만의 어린이 1,800명을 무작위로 추출, 북한지역의 영양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.
- 이 조사에 의하면 7세미만의 어린이 62%가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, 16%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(장애인)

○장애인들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도시에서 산간요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되고 있음.

-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애인을 본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귀순자들도 장애인들은 불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거주를 제한받고 있다고 증언함.
- 장애인들이 영구 피임조치를 취했을 때 당의 승인하에 평양 등 특정지역에 거주함.

마. 인종, 성별, 종교, 장애,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

2.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

가. 노동자 권리

(1) 결사의 권리

<미 북한인권보고서>

○노동당이 모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노조결성은 불가능함.
- 북한의 노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「조선직업총동맹」이 있음.

○「조선직업총동맹」은 전통적인 “스탈린식” 모델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, 생산량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할 책임을 짐.
- 파업할 권리는 없음.
- 북한은 국제노동기구(ILO)의 회원이 아님.

나. 조직권리와 집단협상권리

○정부가 임금을 책정하고 직장을 배정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집단협상 권리는 없음.

○외국기업들은 노동당이 제공하는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.

다. 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

○강제, 의무노동 금지에 대한 법률조항은 없으며, 정부는 빈번하게 주민들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고 있음.
- 군 장병들도 일상적으로 건설현장에 투입
- “교정을 위한 노동”과 “노동을 통한 재교육”이 정치적 범죄에 대한 일상적인 처벌임.

○AI는 벌목, 추수돕기와 같은 강제노동이 죄수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.
- 학교학생들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이나 농장에 단기적으로 노동에 동원되고 있음.

다. 어린이 노동실태와 취업의 최소 연령

○헌법에 16세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음.
- 15세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짐.
-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한 강제노동 금지 규정이 없고, 학생들이 공장과 농장에서 노력 동원을 실시하고 있음.

마. 노동조건

○국가소유 산업에서 최저 임금에 관한 자료가 없음.
- 최근 식량난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임금과 식량배급은 생계 수준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부양하는데 적절하였던 것 같음.

- 정부가 모든 교육, 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주요 보상은 아님.

○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한달에 약 80달러, 자유경제무역지대 이외의 외국합작기업은 한달에 약 110 달러임.
-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의 비숙련공의 임금은 한달에 110 달러
- 숙련공은 수행한 작업 성격에 따라 임금 지급

○ 헌법에서는 모든 노동년령의 주민들은 노동을 해야 하고 “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준수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형법에서 의도적인 태업으로 국가의 산업, 상업 또는 운수를 방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위로 임무수행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.
- 상습지각은 “반사회주의 파괴”로 규정되며, 북한관리는 외국기업에 대해 노동자들의 소요, 파업, 의견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

○ 헌법에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2~16시간 일하고 있음.

○ 직장 안전에 문제가 많고 산업재해율이 높음.

바. 인신매매

○ 인신매매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없음.

○ 북한의 부녀자와 처녀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중국인 처로 팔려가고 있다는 보고가 1999년 초반에 있었음.
- 매매조직으로 인해 인신매매는 증가하고 있음.

<북한인권백서>

○ 북한에는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조가 존재하지 않음.
- 유일한 노조로 「조선직업총동맹」이 있으나, 이 조직은 자발적 조직과 단체가 아니며 단체교섭 및 파업권리를 갖고 있지 못함.
- '위대한 수령님'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방조조직임.

○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음.
-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본일과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, 각종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음.
- 또한 북한당국이 정해 놓은 사업계획을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고 있어 노동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함.

○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, 당과 국가가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집단배치('무리' 배치)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음.

○ 형법에는 직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산업, 운수, 상업, 신용제도를 파탄·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고, 직무를 태만이 이행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노조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.

○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음.
- 초기에는 중국의 농촌 총각들과 결혼을 주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.
- 현재는 유흥업소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어 중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.
- 결혼의 경우에도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,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등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사. 기타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

○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「북한인권백서」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는 다음과 같음.

(1) 생존권

○ 현재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존권임.
- 생존권 위협의 일차적 요인은 식량 배급이 중단되거나 대폭감소했기 때문임.

○ 북한은 매년 100~2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임.
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와 세계식량계획(WFP)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129만 3천톤으로 추정

○ 1999년 9월 데이비드 모턴(David Morton) 북한주재 세계식량계획 대표는 지난 95년이후 북한에서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명 내외라고 밝힘.

- 1999년 남한정부는 북한의 사회안정성 내부문건을 인용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50~300만명 정도라고 밝힘.

(2) 사회보장권

○북한은 사회보장제도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으나, 제도와 실천간에 커다란 괴리가 있음.
- 사회보험에는 연금제도가 있을 뿐 대부분은 공적 부조로 운영됨.
- 연금제도는 직장인을 대상(남자 60세, 여자55세)으로 하고, 공적 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임.

○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부문은 '무상치료제'인데 경제난으로 실현이 거의 안되고 있음.
- 의사와 의료기관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, 성분에 따른 의료체계를 적용
- 의료시설 빈약과 약품부족으로 주민들은 본인이 의약품을 구해야 하는 실정
- 특히 양성결핵환자는 100만명수준이고 감염자는 700~8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.

(3) 근로권

○북한에서는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.
- 만 16세 이상은 당이 정해주는 직장에서 노동할 의무가 있음.

(4) 직업선택의 자유

○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급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짐.

- 직장배치에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 우선함.

V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에 대한 평가 및 우리의 고려사항

1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 평가

○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는 매년 20쪽 미만의 분량으로 북한인권침해 주요 사례를 지적하고 있고, 그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적·정치적 권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.

- 주요 내용은 생명권, 시민의 자유, 정치적 권리, 사회계층에 기초한 차별, 국제기구의 북한인권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임.
- 노동권이 유일하게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로 취급되고 있음.

○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에서는 북한을 김정일이 조선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전체주의 독재를 실시하는 '주체'사상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음.

- 「미 중국인권보고서」에서 중국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로 기술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 칭하지 않음.
- 물론 북한인권실태의 기술에서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형법에 규정된 '반사회주의' 범죄를 거론하면서 4번 정도 사용

○미국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인권개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평가함.

- 김정일은 인권이 부패한 서구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한 외국의 개념이라고 주장

- 인권, 특히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당과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
-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의무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 및 집단주의가 우선

○「프리덤 하우스」는 1998~99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"가장 자유 없는 국가군"으로 분류
- 그 구체적인 예로 국제인권규약이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과 생존권의 위협, 불법구금, 공개처형,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성분 분류에 의한 차별 등을 지적하고 있음.

○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다 균형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노동권 이외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를 포함시켜야 할 것임.

○금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유부녀와 처녀들의 인신매매와 종교인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임.
- 종교활동과 관련, 남한의 종교단체들이 연변지역이나 조선족 사회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음.
- 인신매매는 3~4년 전부터 보고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중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○북한의 폐쇄정책으로 국제인권기구나 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실태조사의 어려움으로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.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에서는 73건의 주요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

바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탈북자 증언: 15건
- NGOs 보고: 14건; 이중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 인용은 11건
- 각종 신뢰할 만한 증언 및 보고: 14건
- 유엔기구 보고: 6건
- 북한정부 관리 증언: 5건
- 외국인 방문자 증언: 5건
- 남한언론 보도: 4건
- 외국통신, 남한정부, 일본언론 각 2건
- 기타자료: 4건

○ 따라서 주요 정보원인 탈북자들의 증언 자료를 보다 면밀히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.

○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의 내용은 지면의 제약으로 보다 심도있는 실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,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「북한인권백서」의 내용에 비해 매우 빈약함. 또한, 「미 인권보고서」의 내용은 「북한인권백서」의 내용보다 1~2년이 늦거나,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음.

- 죄수들에 대한 생체실험이나 인신매매 및 정치범수용소의 비인간적 대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「북한인권백서」보다 보고가 늦음.
- 노동권이 유일하게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로 취급되고 있음.
-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전담하고 농장지도국이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함. 사회안전성은 일반범죄를 다루고, 사회안전성의 교화국이 교화소를 관리함 .

○ 미국이 탈북자문제를 미·북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.

- 지난 4~5년간 러시아의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어 왔지만 중국내 탈북자문제는 다루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미·북정치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.
- 이 문제에 대한 남한 미디어의 비판은 향후 중국내 탈북자문제를 거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2. 우리의 고려사항

○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.

-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는 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AI 및 국제 NGO들의 활동이 기여
- 「미 북한인권백서」, 통일연구원의 「북한인권백서」(영문판), 기타 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실태 보고 등이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화하는데 기여
- 향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.

○ 현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결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.

○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조치와 관련, 우선적으로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조사·연구·보고하도록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인권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.

- 이와 같은 노력이 남·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으나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북한을 국제규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남·북관계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.

○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「유엔난민고등판무관」(UNHCR)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취하고, 이들 중 남한으로의 귀순을 원하는 자들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귀순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.

<부록>

1. 시민적·정치적 권리

가. 개인의 존엄성과 관계된 자유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정치적 및 재판을 거치지 않는 처형	- 이데올로기적 일탈, 반혁명범죄, 반사회주의 등을 이유로 사형 선고 - 국제사면위원회 보고를 인용하여 23명 공개처형	- 국가전복음모죄, 반동선동선전죄, 조국반역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 - “00호관리소”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 설명 - 공개처형은 1995년부터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전국적 규모로 실시, 따라서 AI의 보고수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됨
행방불명	- 정치범은 정부의 책임하에 재판 없이 비밀리에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- 외국인 납치에도 개입	- 정치범의 경우 연좌제 적용 - 납북억류자 취급: 납북자 총 3,756명, 현재 억류자 454명
고문과 기타 잔악한 행위,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 처우 또는 처벌	- 죄수들에 대한 학대와 질병, 굶주림, 유기 등으로 인한 사망	- 경제범이나 강력범은 교화소에 수용, 17시간 이상의 노동 강요 -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정상적 배급, 의료혜택 중지, 결혼 및 출산 금지, 면회나 서신연락 금지
불법적 체포, 구금 및 추방	- 북한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구금, 투옥 - 12개 정치범수용소에 15만~20만 수용 - 주민들의 강제이주가 일상적	- 사전영장제도 없이 수색, 압수 및 구속처분 가능 - 10개의 정치범수용소에 20만 7천명 수용(국가정보원 자료) -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 혹은 강제이주 - 장애인을 강제이주 후 집단관리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거부	- 헌법에 규정된 재판소의 독립과 법에 따른 재판 미실행 - 정치범 재판에는 변호사가 제공되지 않으며 형사범 재판에 제공되는 변호사도 피고의 권리옹호보다는 죄의 자백 유도	- 변호사는 당의 지도를 받는 변호사회의 직원으로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 - 각 단위마다 설치된 「법무생활지도위원회」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 담당
사생활, 가정, 통신에 대한 불법적 간섭	- 북한당국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나 당의 목표를 저해하는 외국의 사회개념으로 인식 -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필적감정으로 청원자 색출 및 처 - 집단주의, 민족주의, 주체사상이 개인의 권리보다 중요 - 핵심, 동요, 적대의 세계층으로 분류	-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 사례는 도청 - '생활총화제도'를 통하여 전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 - 전체주민을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 - 복잡군중(적대계층)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

나. 시민의 자유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표현과 언론의 자유	-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의 준수와 집단정신에 대한 복종이 개인이 권리와 시민의 자유보다 우선 - 정부비판이 정책비판시 감옥이나 노동교화소 수용 - 외국방송 등 외부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	- 김일성, 김정일 교시에 대한 비판불허 -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동자 - 유언비어 즉, 비밀통신을 통해서 한정된 형태로 정보 획득
집회와 결사의 자유	- 헌법에 규정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실행되지 않고 있음	- 북한주민은 만6세부터 정년퇴임시까지 각종 조직에 가입, 이들 조직은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 수행 -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, 결사는 집단적 소요로 간주
신앙의 자유	- 헌법에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종교를 '외세를 끌어들이거나'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모순되게 규정 - 종교적 이유로 투옥된 자는 다른 죄수보다 가혹하게 대우	-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며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도구로 간조 -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은 없고 선전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외의 종교인은 존재하지 않음
국내이동, 해외여행, 이민 및 송환의 자유	- 국내여행은 공무여행, 친척의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여행증 발급후 인정 - 러시아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상 - 탈북자 친족들에 대한 가혹한 보복과 탈북 및 탈북시도를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 - 1959~82년까지 자발적으로 송환된 재일교포는 9만 3천명 - 북한은 유엔회원국이면서도 국제난민포럼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접촉이 없음	-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'거주, 려행의 자유'를 명문화하였으나 실천에 옮겨지지는 않고 있음 - 식량난으로 여행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불법적인 여행 급증 -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와는 달리 중국내 탈북자 실상에 대하여 상세히 취급 - 러시아내 탈북자 실태는 「미 북한인권보고서」와 유사

다. 정치적 권리: 시민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	-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리더쉽이나 정권을 교체할 권리가 없음 -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수정당이 있으나 조선노동당이 창설 - 자유선거와 정당간의 경쟁을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이라고 비난 - 당정 고위직에 여성이 거의 없음	- 헌법에 일반적, 평등적,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선전도구에 불과 - 조선노동당이 사전에 추천한 단일입후보제 실시 -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.5%에 불과

라.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국제 및 민간 인권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	- 북한은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거나 인권침해를 비판할 수 있는 국내조직 불허용 - 1992년 창설된 「조선인권연구협회」는 북한정부의 선전기관에 불과 - 1996년 AI의 대표단의 한차례 방문 이후 다른 국제인권단체의 북한방문 무시 -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실태를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 -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탈퇴에 대해 불가 통보	- 국제사회의 대응부분은 없으며 AI의 활동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 - 「조선인권협회」는 출소공산주의자 송환문제를 국제화시키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활동 전개

마. 인종, 성별, 종교, 장애,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차별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여성	- 여성노동력의 비율이 인구비례에 상응하지만 여성은 당정 고위직에 거의 진출하지 못함 - 북한 여성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보고가 있음	-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 구조로 인해 사회참여나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권리 침해 - 경제활동의 49.5%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근무 - 가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은 성폭행임
어린이	-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가족위주의 가치 반영 - 어린이들은 강렬한 정치교육의 대상 -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함 - 기아와 질병으로 8만의 어린이가 사망의 위험, 80만 이상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- 고아나 집없는 아이들은 9·27수용소에 수용	- 북한은 11년동안 무상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이 교육의 주된 목적 - 경제난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 - 학생들은 봄과 가을 두달에 걸쳐 의무적으로 노력봉사에 동원 - 경제난으로 학생이나 교원들의 출석, 출근율이 저조 - 식량난으로 어린들의 발육과 생명에 위협
장애인	-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용인 - 평양에서 2~3년에 한번씩 장애인을 지방의 특별구역으로 격리 - 장애인 관련 법적 규정 없음	- 장애인들을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도시에서 산가오지나 외딴 섬으로 추방

2.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

분 류	미 북한인권보고서	북한인권백서
노동자 권리	- 노동당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므로 노조 결성은 불가능 - 「조선직업총동맹」은 생산량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역할 수행	-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노조는 없음 - 「조선직업총동맹」은 수령님의 교시를 옹호관철하는 당의 방조조직에 불과 - 강제노동 금지조항은 없으며 추가노력 동원, 각종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음 -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집단배치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유린 - 식량난으로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중국에서 발생
조직권리와 집단협상권리	- 정부가 임금책정 및 직장배치 - 외국기업들은 노동당이 제공하는 노동자 고용	
강제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	- 강제, 의무노동 금지에 대한 법률조항은 없으며 정부는 빈번하게 주민들을 건설현장에 동원 - 죄수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	
어린이 노동실태와 취업의 최소연령	- 헌법에 규정된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학생들은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음	
노동조건	- 국가소유 산업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가 없음 - 헌법에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12~16시간 노동	
인신매매	- 북한의 부녀자와 처녀들이 가족들에 의해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언급	
기타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	- 생존권과 사회보장권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음	<생존권> - 현재 생존권이 심각한데 매년 100~200만톤의 식량부족 - 엄청난 수의 아사자 발생 <사회보장권> -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와 실천간에 괴리 존재 -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제는 경제난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 - 이외에도 「북한인권백서」에서는 '근로권', '직업선택의 자유' 등을 다루고 있음